

1. 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305호, 2020. 5. 26.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서식 마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영 제2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합의 절차 진행 중

라. 기타 : 1) 입법예고 : 추후 시행 예정
2) 행정규제 : 추후 시행 예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영 제2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기관(재외공관/대한적십자사)	처리기간 신청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
사할린동포 신규 신청 []	국적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성명(한글)	성별 [] 남 [] 여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영문)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권 유효기간	
	주소	전화번호	
	입주희망 [] 아파트 [] 양로원 [] 요양원 [] 전문요양원		

※ 이하 표는 기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인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기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상 동반가족은 아래 본인이 해당하는 칸에 작성합니다.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국적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한글)	성별 [] 남 [] 여		
	(영문)	생년월일		
	사할린동포와의 관계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권 유효기간		
	주소	전화번호		
입주희망 [] 아파트 [] 양로원 [] 요양원 [] 전문요양원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	국적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한글)	성별 [] 남 [] 여		
	(영문)	생년월일		
	사할린동포와의 관계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권 유효기간		
	주소	전화번호		
입주희망 [] 아파트 [] 양로원 [] 요양원 [] 전문요양원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국적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한글) (영문)	성별 [] 남 [] 여		
	사할린동포와의 관계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권 유효기간		
	주소	전화번호		
입주희망 [] 아파트 [] 양로원 [] 요양원 [] 전문요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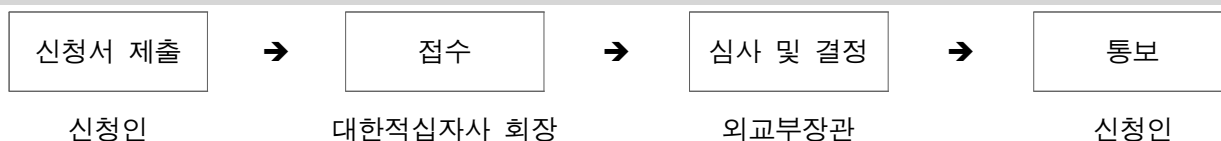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신규 신청하는 사할린동포인 경우 :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에서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으로의 이주·사할린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여권 사본 1부 2.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인 경우 :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거주지의 제도에 따라 해당서류 제출), 여권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외교부장관 및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할린동포 (서명 또는 인)
 동반가족 (서명 또는 인)
 동반가족 (서명 또는 인)
 동반가족 (서명 또는 인)

국내 신청 처리절차



국외 신청 처리절차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할린동포 (서명 또는 인)
 동반가족 (서명 또는 인)
 동반가족 (서명 또는 인)
 동반가족 (서명 또는 인)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인인 경우, 사할린동포의 서명 또는 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장관 귀하